

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의 목적

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대상자(보호자)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구비서류

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.

- ① 장기요양 인정서 1부
-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
- ③ 복지용구 이용계획서 1부
- ④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.
- ⑤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1부, 급여계획서 1부 등
- ⑥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: 입소 승인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1부

3. 계약기간

- ①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.
- ② 계약기간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대상자(또는 보호자)의 요구에 따라 인정유효기간 내 원하는 기간까지로 할 수 있다.
-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장기요양 대상자의 사망, 요양원 입소 및 병원 입원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길 시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한다.
- ⑤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이나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.

4. 월 이용료

-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.

등 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월 한도액(원)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
- ②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
급여종류	수 가 (단위 : 원 / 회당)							
방문요양	30분이상	60분이상	90분이상	120분이상	150분이상	180분이상	210분이상	240분이상
	16,630	24,120	32,510	41,380	48,250	54,320	60,530	66,770

- ③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1회 방문 당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.

급여종류	수 가 (단위 : 원 / 회당)		
방문목욕	목욕차량 이용 (차량 내 목욕)	목욕차량 이용 (가정 내 목욕)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
	84,670	76,340	47,670

5. 비용의 부담

① 본인부담금

가.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(총 수가금액× 본인부담률)을 대상자(또는 보호자)로부터 받고,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(공단부담금)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.

나. 대상자의 자격조건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일반 대상자	40%감경 대상자	60%감경 대상자	기초생활수급권자
재가급여	15%	9%	6%	0%

②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

가. 방문요양 급여는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방문요양 급여는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,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.

구분	급여비용
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	급여비용의 30%를 가산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	
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유급휴일 및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	급여비용의 50%를 가산

③ 방문목욕 급여비용

가.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한다.

나.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,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한다.

6. 본인부담금 납입

- ① 기관은 매월 대상자(또는 보호자)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대상자(또는 보호자)에게 문자 발송한다.

- ② 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매월 말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③ 본인부담금 납부는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기관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,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.
-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에 기록하고, 대상자(또는 보호자)에게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.
- ⑤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은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.

7. 그 밖의 이용부담액

-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②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.
-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교통비, 식재료 비 등의 기타비용은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8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
- ③ 대상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④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- 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⑥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,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,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9.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
-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
-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
- ④ 대상자의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
- ⑥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(수급자)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(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). 단,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,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

10. 계약의 해제

-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.
-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.
 - 가.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나.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

다.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
라. 폭행, 욕설,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,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

마.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바. 이용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기관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
사.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③ 병원입원,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즉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대상자(또는 보호자)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,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